2023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



나사렛대학교 입학처

목 차

1.	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1
2.	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1
3.	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3
4.	문항 분석 결과 요약3
5.	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4
6.	부록(나사렛대학교 학칙 제14조) 4

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

	상 입학전형		입학 모집요강 열 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	I HU 🛨	하위 문항 번호	계열 및 교과									
						인문사회				과학					
평가대상		계열				국 어	사 회		수 학	물 리	화 학	생명과학	지구과학	기 타	교과 외
논술 등 필답고사	_	I	_	_	_	_	_	_	l	_	_	_	_	ı	_
	[수시]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(일부 학과) [정시] 수능위주전형(일부 학과) 장애학생전형 실기전형(일부 학과)	전체	_	_	_	_	_	_	_	_	_	_	_		0
선다형 고사	_	_	_	_	_	_	_	_	_	_	_	_	_		_

[※] 본교는 면접을 실시하는 모든 입학전형에서 교과지식과 관련성이 없는 구술 면접을 진행하며, 면접 문항을 고사 전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험생의 면접고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2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가. 추진목적: 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에 의거 나사렛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 몇 면접고사 전형과 관련하여 대학자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

구분					
ੀ ਦ 	항목	세부내용	이행 점검		
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	1.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	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(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)	0		

		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	0
	2.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	③ 문항 제출 양식(문항카드) 작성의 충실성	해당없음
이행 사항 점검		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	0
д Б	3.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	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	0
		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	0

다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: 나사렛대학교 학칙 제14조라.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
1) 기본방향

- 가) 입학처장, 입학관리팀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함.
- 나) 입학처장, 입학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이며,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함.
- 다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구성은 내부위원,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며 외부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함.

2) 위원회 구성

가) 인원: 위원장 포함 10명(내부위원 7명, 외부위원 3명)

나) 위촉기간: 2023. 3. 22.~2024. 2. 28.

3)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

연번	구분	소속	직위	성명	비고	
1			처장	김준연	위원장/당연직	
2			팀장	한명섭	당연직	
3			계장	이인수		
4	내부위원	내부위원	입학처	계장	김규완	
5			직원	정광석	입학관리팀 입학 업무 담당자	
6			직원	강태구		
7			직원	김지우		
8				박종희	3학년 부장 교사	
9	외부위원	쌍용 고등학교	교사	구성완	지참 다다 그기	
10				안환인	진학 담당 교사	

- 4) 위원회 회의 일정
 - 가) 일시: 2023. 3. 29.(수)
 - 나) 서류 검토기간: 2023. 3. 22.(수)~28.(화)
 - 다) 기타
 - (1)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(e-mail) 회의 진행
 - (2) 본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및 면접고사 출제 문항을 검토 후 검토의견서 이메일 제출
- 마.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
 - 1) 면접 및 실기고사 전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점검 진행
 - 2) 전형 종료 후 사후평가 진행
 - 3) 선행학습영향평가 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대입전형 운영에 적극 반영

3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

가. 본교의 인재상인 「남을 도울 수 있는 정신과 역량을 겸비한 나눔 인재」에 적합한 학생 선발을 위하여 면접고사에서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으로 인성 및 자기계발의지를 중심으로 한 구술평가를 진행하고 있음.

고사 구분	평가 항목 및 비율
면접고사	인성(30%), 전공적합성(30%), 자기계발의지(40%)

- 나. 본교의 면접고사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면접 문항 등과 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이 일체 없음.
- 다. 본교는 면접고사 전 평가위원 대상자 교육, 평가기준 서면 안내, 면접 고사 종료 후 면접 기출 질문 전수 점검 등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라. 본교는 고교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한 논술고사, 필기고사, 적성검사 등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음.

4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가. 나사렛대학교 면접 및 실기고사 운영 현황

 유형	영향평가 대상 여부	비고
면접고사	0	_
실기고사	X	_

- 나.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대학의 분석
 - 1) 면접 형태
 - 가) 본교의 면접고사는 교과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전혀 없음.
 - 나)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사전 공개한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대답하는 방식의 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, 전공적합성, 자기계발의지 등을 평가하였음.
 - 다) 교과 지식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.
 - 2) 면접 문항 예시
 - 가) 00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기 바랍니다.
 - 나) 고교생활 중 본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보기 바랍니다.
 - 다) 대학 진학 후 진로 계획에 대해 말해보기 바랍니다.

5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- 가. 본교의 면접고사는 상기의 내용처럼 지원자의 인성, 전공적합성, 자기계발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면접으로 진행되며, 선행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체 없음.
- 나. 본교는 2024학년도에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행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차단하고 금번 선행학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고교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.

6 부록(나사렛대학교 학칙 제14조)

제14조(대입전형위원회 및 대입공정위원회)

- ① 본교의 입시전형과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입전형위원회 및 대입공정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8.04.23.)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대입전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임무를 수행하며, 위원회는 아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3.5.15., 2018.04.23.)
- 1.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
- 2.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
- 3.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
- 4. 입학전형 합격자 사정
- ④ 대입공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18.04.23.)
- 1.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한 효과적 정책개발
- 2. 입시관리 업무의 감시
- 3. 입시 자체 감사
- 4.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-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 수행내용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대입전형위원회 아래 입학처장과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하는 10명 이내의 자체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(관련근거 :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0조)(2015.11.30. 신설)(개정 2018.04.23.)
- 1.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내용,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
- 3.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
- 4.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- 5.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⑨ 자체영향평가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,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 (2015.11.30. 신설)